

2015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주요내용

조례안 ·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서관의 도로명 주소 변경과 다문화자료실 등의 신설을 반영하고 등록규제와 인권침해 우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함(안 제2조)
- 나. 시설 사용승낙의 취소 규정 보완(안 제10조제1항 제4호, 제5호)
- 다. 입관의 제한 사유 중 장애인의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안 제17조)
- 라. 모자열람실 명칭 변경 및 다문화자료실과 장애인정보누리터 신설과 복사규격 현실화(별표 1,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도서관의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비도서 종류를 변경, 관외대출 권수를 확대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심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도서 이용 중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비치하지 않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삭제하고, 어린이전자정보열람실 폐관을 반영(안 제2조)
- 나. 도서관 이용 제한 시 저작권법 준수, 유해정보 검색 제한 등 추가(안 제3조)
- 다. 관외대출 가능권수를 3권에서 7권으로 확대(안 제5조)
- 라. 민간위탁기관의 심사,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8조, 제12조, 제14조~제15조)
-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도서관 이용 관련 서식을 보완함(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캠페인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 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11조)
- 마.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위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안 제1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 조치 없이 운영비로 충당)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규정 위반이므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우리 구의 종량제 수수료는 '97년 이후 현재까지 18년간 동결되었으나 쓰레기 처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서울시에서 제시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25개구 공통)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배출하는 자의 부담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용어 정리 및 지급 근거규정 마련 (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 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별도로 기준을 정함 (안 제23조제2항)
- 다. 종량제규격 봉투 구분 및 용어 정리 (안 제24조제1항 및 제6항)
- 라.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안 제36조)
- 마.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안 제23조제2항 별표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기준 개선

- 서울시 조례 준칙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 시 영업장 면적 외에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 (안 제2조제3호)

다.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사항 조례 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 신설(안 제5조)
- 상위 법령에 맞게 별지 서식 신설 및 보완 정비
(별지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라.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2년 동안 단계적 인상(제9조 관련 별표 3)